

● 제311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8. 0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최호정 의원 외 75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2. 07. 06.
- 다. 회부일 : 2022. 07. 11.
- 라. 의안번호 :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에 있어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부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구비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임.
- 현재 서울 교육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아 우수한 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일부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주 큰 실정임.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특히 어려운 계층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등이 부재하여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초·중·고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력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¹⁾ 구성을 제안함.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기초학력²⁾은 「초·중등교육법」³⁾에 명시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뜻함.
- 이러한 기초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⁴⁾한 ‘202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붙임. 1 참조)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 수준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

3)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4) 교육부 보도자료,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2022. 6. 13.

<표-1> 2017 ~ 2020 교과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7	2.5 (0.14)	6.9 (0.27)	3.1 (0.17)	4.7 (0.32)	9.2 (0.51)	3.8 (0.27)
2018	4.4 (0.26)	11.1 (0.41)	5.3 (0.29)	3.4 (0.35)	10.4 (0.66)	6.2 (0.51)
2019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2020	6.4 (0.4)	13.4 (0.59)	7.1 (0.43)	6.8 (0.52)	13.5 (0.75)	8.6 (0.64)
2021	6.0 (0.33)	11.6 (0.49)	5.9 (0.33)	7.1 (0.52)	14.2 (0.83)	9.8 (0.62)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이하 동일)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이하 동일)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및 기초학력 미달률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기초학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⁵⁾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목별 성취수준 비율이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영역별 성취 수준 상에서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단위 학교-시도교육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음.⁶⁾

5) 기초학력진단-보정 정책의 현황과 대안, 교육비평 제48호, 2022.

6)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이광현. 교육정치학연구, 2021.

- 최근 교육부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⁷⁾
- 참고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2022. 3. 25.) 중에 있음(붙임. 2.)
 - 주요 내용으로는 △ 5년 단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서울시도 2021년 6월 ‘서울형 교육 플랫폼(서울런) 구축 기본계획’⁸⁾을 수립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집중 심화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⁹⁾에게 공적 플랫폼인 ‘서울런’(https://slearn.seoul.go.kr)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음(붙임. 3 참조).

7) 일정 : 전문가·이해당사자 의견수렴(~ 2022. 8월) → 확정·발표(2022. 10월), 교육부 보도자료. 2022. 6. 13.

8)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Seoul Learn’) 구축 기본계획,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플랫폼추진반, 2021. 7.

9) 가입대상 : 소득기준대상,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만6~24세)

- 소득기준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 지난 7월 1부터 서울시(평생교육국 교육플랫폼추진반)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¹⁰⁾의 하나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시행¹¹⁾하고,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 사다리를 회복하는 등 ‘서울런’을 평생교육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¹²⁾임.
- 또한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적 대응과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2022. 3. 25.)됨에 따라, 서울시 초·중등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도 기초학력 보장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기초학력 진단과 교실- 학교- 학교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기존의 다양한 기초학력 정책 등을 정교화·체계화하는 내용임(붙임. 4, 5. 참조).
- 서울의 심화되는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와 기초학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성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자의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0)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생계-안심소득 시범사업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 확충

11) 7.1.부터 교과비교과 학습사이트 11개→14개 확대, 학습사이트 선택도 최대 2개→3개, 진로·진학정보 비대칭 해소 1:1 컨설팅, 취업 선택 청소년은 직업문화체험 기회 제공, ’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대비 콘텐츠 추가, 편입영어·편입수학 등 제공 등.

12)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박차…7.1.부터 서울런 학습 사이트 확대’, 서울시 보도자료, 2022.6. 29.

-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활동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평생교육국)와 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 2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¹³⁾에 부합함.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¹⁴⁾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결과, 교육위원회는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 행정자치위원회(붙임. 6 참조)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목적인 학생의 학력진단·학력향상 관련 점검·개선 및 대책강구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사무와 직접적이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바, 평생교육국의 소관 사무와는 연관성이 현저히 적다는 의견을 회신함.

1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1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학업성취 수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개요】

- (목적)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 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시행일) 2021. 9. 14.(화)
- (평가 대상) 전체 학생(중3·고2 학생 총 780,203명)의 약 3%, 22,297명(448개교)
- (영역) **교과** 국수영, **설문**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등
- (성취수준)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 ❖ (1수준) 모든 교과에서 2020년 결과와 유사
- ❖ (3수준 이상) 고등학교 국어는 64.3%로 전년 대비 5.5%p 감소

【교과별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20	75.4 (0.76)	57.7 (1.01)	63.9 (1.1)	69.8 (1.14)	60.8 (1.27)	76.7 (1.07)
'21	74.4 (0.79)	55.6 (1.05)	64.3 (1.01)	64.3 (1.23)	63.1 (1.32)	74.5 (1.17)

【교과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9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20	6.4 (0.4)	13.4 (0.59)	7.1 (0.43)	6.8 (0.52)	13.5 (0.75)	8.6 (0.64)
'21	6.0 (0.33)	11.6 (0.49)	5.9 (0.33)	7.1 (0.52)	14.2 (0.83)	9.8 (0.62)

-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이하 동일)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이하 동일)
 3. 은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이하 동일)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

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

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2022년 서울런 운영 개요(서울시 평생교육국)

- 사이트명 : 서울런(<https://slearn.seoul.go.kr>)
- 운영기간 : '22.1.1.~12.31. ※ 기초회원 학습사이트 변경 및 신규회원 가입: '22.2월중
- 사업대상 : 소득기준대상, 학교밖·다문화가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 ※ 법정한부모 : 중위소득 60% 이하(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가입연령 : 만 6세(취학연령) ~ 만 24세(청소년 상한 연령)
- 사업내용 : 맞춤형 멘토링 지원 및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멘 토 링]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 및 사회성 함양
 - (온 라 인) 서울런 1:1 온라인 멘토링 제공(기본 주1회, 60분씩, 탄력적 운영)
 - (기관연계) 자치구 방과후활동 이음단을 통한 타기관 멘토링 연계지원
 - ※ 여체능 특화 멘토링은 교육청 교육경비보조사업(1,000백만원)으로 실시(50개교)
 - [콘 텐 츠] 교육 바우처(서울사랑상품권)를 통해 연계 사이트에서 개인별 구매 수강
 - (초 등) 1인당 연간 최대 720천원(月6만원×12개월)
 - ※ 초등과정은 업체에서 전용기기 및 멘토링 교사를 제공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책정
 - (중 · 고등) 1인당 연간 최대 420천원(月3.5만원×12개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검정고시	전문자격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a	수박씨, 엠베스트 +a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a	에듀윌	에듀윌

- 총사업비 : 133.2억원(멘토링 55.3억원, 콘텐츠 지원 77.9억원)

붙임.4

2022년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교육청 중등교육과)

비전

모든 학생의 성장을 믿는 책임 교육

목표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중등 기본학력 지원

추진 과제

<p>학교 교육과정(수업) 내 지도·지원 강화</p>	<p>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교육과정 내 협력강사 지원 ▶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활동 연계 지원 ▶ 배움이 있는 학생 맞춤형 수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본학력 책임지도제 확대 운영(중·고) ▶ 단위학교별 진단·지원 체제 구축 및 지원 ▶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토닥토닥 키다리샘 지속 운영 - 서울형 두드림학교(60교) - 신규기본학력 맞춤형교육 선도학교(10교)
<p>기본학력 보장 지원체제 강화</p>	<p>교원 및 학부모 역량 제고 및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체제 정립 ▶ 지역학습도움센터 중심 학교통합지원 강화 ▶ 중점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책임지도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맞춤형 학생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홍보 강화 ▶ 지역사회 및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붙임.5

2022년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교육청 초등교육과)

추진

비전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실현

방향

목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

전략

- 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보장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지원**

1단계 (교실)

교육과정(수업) 내 기초학력 지도 강화

- 체계적 진단-보정 활동 활성화
- 기초학력 키다리샘 지원 확대
-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속 지원

2단계 (학교 안)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 학습지원담당교원 지정·운영 및 연수지원
-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다중지원팀 운영 정착
- 서울두드림학교 운영 모델 확산

3단계 (학교 밖)

학교 밖 지원 강화

- 지역 밀착형 '찾아가는 학습상담' 확대
- 학생통합지원 체계화
- 난독·경계선지능 중재 지원 강화

**기초학력
보장 기반
강화**

1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교사의 기초학력 보장 활동 자료 지원
-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정립

2

학교·가정·지역사회 역량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단위학교 지도 역량 제고 지원
- 가정 연계 지도를 위한 학부모 인식 제고
- 기초학력 지원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제출 -**

〈2022.7.18.〉

□ 본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 본 특별위원회는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학력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제외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 평생교육국은 교육의 직접시행이 아닌 서울시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및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목적인 학생의 학력진단·학력향상 관련 점검·개선 및 대책강구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사무와 직접적이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바, 평생교육국의 소관 사무와는 연관성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의 소관인바, 학력진단과 학력향상 등 점검·평가·진단·개선방안 마련 후 개선방안의 실행 및 추진에 있어 평생교육국은 본 특별위원회의 보조적 참여자, 교육청과 공동 추진주체 또는 지원주체로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